



보호구

제1편 총칙

제4장 보호구 제31조 ~ 제34조

1 보호구란?

-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

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

-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, 근로자가 유해·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조치를 실시해야 함
-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 사용

보호구 선택 시 고려사항

- 1** 작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분석
 - 가스, 분진, 화학물질 등 다양한 유해요인 유무를 조사하고 해당 유해요인에 맞는 보호구 선택
- 2** 작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의 수준 파악
 - 위험성평가,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으로부터 해당 유해·위험요인의 수준을 파악 알맞은 보호구 선택
- 3** 사용 빈도에 따른 선택
 -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따라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파악하여 선택
- 4** 보호범위 설정
 - 작업환경 및 작업종류 등에 따른 보호범위 설정을 고려하여 선택

3 전용 보호구 등

-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, 개인 전용 보호구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실시



☑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

보호구		대상 작업
1	안전모	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
2	승차용 안전모	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
3	안전대	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
4	안전화	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임, 감전 및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
5	보안경	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
6	보안면	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
7	절연용 보호구	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
8	방열복	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
9	방진마스크	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선창 등의 하역작업
10	방한모·방한복·방한화·방한장갑	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

5 보호구의 관리

-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등 관리 및 청결을 유지(단,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, 안전모, 보안경의 경우 예외)
- 방진·방독마스크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




보호구 보관함을 통한 청결 관리



필터의 주기적 교체

☺ 보호구 착용 대상 작업

보호구	사용방법 및 관리
<p>1 안전모</p> <p>안전모 착용 및 사용 길잡이</p> 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착용체 조절나사로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 · 착용한 다음 턱끈을 조여 벗겨지지 않도록 함 · 착용 중에 모체가 충격을 받거나 변형되면 폐기 · 모체를 유기용제 등으로 닦거나 세척하지 않도록 함 · 턱끈 등 착용체는 변형되거나 인증되지 않은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도록 함
<p>2 안전대</p> <p>안전대 착용 및 사용 길잡이</p> 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안전대 걸리(부착설비 등)를 설치 · 1줄 지지로프(수평수직)를 부착설비로 사용 시 1명만 사용 · 안전대 설치 구조물은 벨트보다 조금 높은 곳에 뒤야 함 · 작업 시작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를 점검 · 로프의 마모, 금속제 변형 등 부속품의 상태를 점검 · 안전대의 짐줄은 예리한 구조물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함

